



제296회 정례회
2010.12. 3.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0년 11월 11일
- 회부일자 : 2010년 11월 18일

3. 제안이유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등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하는 자를 보호하고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부조리행위 신고를 활성화하며, 이를 통해 공무원 등의 부조리행위를 근절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자로 하고, 신고대상 부조리행위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함 (안 제2조 내지 제3조)

- 1)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2) 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교육청의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 3) 공무원 등이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을 하는 행위

나.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한 공익신고 기한을 정함 (안 제4조)

- 1) 부조리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
- 2) 신고자 본인의 부조리행위와 관련된 경우에는 부조리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

다. 신고방법은 서면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방문·우편·팩스·전화 또는 교육청 홈페이지 이용 가능 (안 제5조)

- 라. 공익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사항 처리, 30일 이내에서 연장 가능 (안 제6조)
- 마. 부조리행위 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 보장, 신분공개 금지, 불이익 처분 등의 금지 (안 제7조 내지 제8조)
- 바.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을 심의하기 위한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 제9조 내지 제12조)
 - 1) 구성 : 위원장(부교육감) 포함 7명 (위촉위원 3명, 당연직 위원 4명)
 - 2) 위원 임기 :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4) 위원이 신고내용의 당사자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에서 제척
- 사. 보상금의 지급은 3천만 원을 한도로 하되, 다음 기준으로 함 (안 제13조)

신고유형 (지급대상)	보 상 금 액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품 수수액의 10배 이내 · 개인별 향응액의 10배 이내 	
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교육청의 재정에 손해를 끼친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정 또는 환수액의 20퍼센트 이내 · 추정 또는 환수가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정 또는 환수 추정액의 10퍼센트 이내 단, 사후 추정 또는 환수가 완성 되면 20퍼센트 이내 추가 지급 	
공무원 등이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선·청탁의 대가인 금품·향응 수수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품 수수액, 개인별 향응 수수액의 10배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선·청탁 행위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백만원 이내

- 아. 보상금의 지급 시기 및 방법 (안 제15조)
 - 1) 보상금은 보상심의위원회 지급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 2) 보상금은 신고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되,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도 가능

자. 보상금 지급 제외 (안 제16조)

-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로 판명된 경우
- 2) 이미 신고 된 사항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 3) 외부기관에서 수사·조사·감사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 4) 언론매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이미 공개된 사항으로 청렴도 향상에 구체적·직접적으로 기여하지 못한 경우

5.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2010년 6월 8일 제29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전체 공직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사유로 보류되었다가 제8대 의원의 임기가 끝남과 동시에 자동 폐기되었던 안건을 다시 상정
- 동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등의(사립학교 교직원포함)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깨끗하고 신뢰받는 충북교육을 구현
-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비리척결을 통한 공정하고 신뢰 받는 공직 풍토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

1. 재정수반 요인

조례안 제11조는 공익신고보상금 지급을 위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운영에 따른 회의경비(위원 수당 및 여비, 관계인 출석 여비, 간담회 등)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제2조 및 제13조 내지 제15조는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수반 요인이 발생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1) 최근 3년간 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 중에서 금품·향응 수수,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이득, 교육청의 재정에 손실을 끼쳐 적발된 현황을 살펴보면 금품·향응 수수가 6명에 6,280만원, 공금 횡령 및 유용이 4명에 2억 3,582만원 등 총 10명에 2억 9,862만원(1인당 평균 2,986만원)의 부조리행위가 발생하였다.

▲ 부패공직자(비위면직자) 현황 / 국민권익위원회 제출 자료

(단위 : 만원)

연도별	금품·향응 수수		횡령 및 유용		계		비고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2008년	4	1,690	2	17,667	6	19,357	
2009년	2	4,450	1	5,600	3	10,050	
2010년		140	1	315	1	455	1인 중복
계	6	6,280	4	23,582	10	29,862	

(2) 위 적발 10건 중 8건은 검찰 및 경찰의 수사와 감사부서의 자체 적발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부모 등의 민원(신고) 등에 의해 적발된 것은 2건으로 '09년도 금품 수수 450만원 1명, '10년도 1명 금품수수 및 횡령 455만원이다.

(3) 민원에 의해 적발된 2건의 경우를 조례안과 관련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가정(안 제13조 관련, 별표)할 경우 공익신고 보상금으로 2009년도에 3천만원(금품수수액 450만원×10배로 하되, 한도액은 3천만원), 2010년도에 91만원(추징·환수액의 20%로 455만원×20%)을 지급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연간 소요액을 추계한다.

그리고 보상금심의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회의운영에 따른 실비 성격의 경비로 비용을 추계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1) 보상금

최근 3년간 발생하여 적발된 부조리행위 중에서 제정 추진 중인 조례안에서 규정한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가정할 때 연간 평균 보상금액은 1,030만원이며, 연간 최고 한도액은 3천만원으로 이를 연간 소요액으로 추정한다.

▲ 최근 3년간 민원(신고)에 의한 부조리 적발 실적 보상금 적용 추정

구 분	연도별 보상금 추정				연간평균 보상금	연간최고 보상금	비고
	2008년	2009년	2010년	계			
금액(만원)	0	3,000	91	3,091	1,030	3,000	

(2) 공익신고 보상심의위원회 운영 소요경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을 위한 위원회 운영은 신고 및 보상금 신청 유무와 매우 밀접하여 편의상 실소요액으로 위원수당 147만원(위촉위원 7명, 1인당 7만원, 3회 기준), 위원회 간담회 운영 60만원(1회당 20만원, 3회 기준) 등 연간 207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한다.

4. 재원조달 방안

공익신고 보상금 제도는 교육감 공약사업(클린 충북교육 청렴봉사 행정 구현)에 포함된 사업으로 교육재정 여건, 공약추진계획을 감안할 때 재원조달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2011년도 당초예산 반영 32,070천원)

5. 부대의견 : 없음.